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794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6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573)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(주)청운구조안전연구원(변종걸),
②백양엔지니어링(주)(김일곤)

나. 전화번호 : ①070-4742-8711, ②02-409-7373

2. 명칭 : 실시간 위치추적장치(RTK-GNSS)와 사진정리시스템을 이용한 절토사면의 현장조사 및 분석기술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> 토질 및 기초 > 사면 관리 및 보강

<기술의 요지>

실시간 위치추적장치인 RTK(Real Time Kinematic)-GNSS를 기반으로 사면내의 점검자와 손상 구간의 위치를 실시간 동기화하고,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과 보고서 작성시 필요로 하는 자료정리 및 이력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분석 기술임.

<범위>

실시간 위치추적장치 RTK(Real Time Kinematic)와 태블릿,휴대폰,카메라를 연동한 모바일앱과 웹서버로 구성되며,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점검자의 실시간위치 및 손상내역/세부촬영,전차손상비교,손상물량통계,상태평가 및 보고서작성이 용이한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분석 시스템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7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